

의안번호	2213027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5.11.19.
추계번호	25B505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신설 (석면건축물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2 (석면건축물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법 제22조제4항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

른 조치로서 석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에 따른 비용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함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한 사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²⁾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거주민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처리비 및 개량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1] 슬레이트 관리 사업 관련 내용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4	2025	2026(안)
슬레이트 관리(자율) (2206-301)	슬레이트 처리지원	과거 지붕재로 집중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거주민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처리비 및 개량비를 지원	76,176	70,506	63,969
슬레이트 관리(세종) (2206-301)			305	305	305
슬레이트 관리(제주) (2206-301)			2,074	1,961	1,91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1)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험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의 규모,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 및 지원의 범위와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석면건축물 현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석면자재 50m²이상 사용)

○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 총 14,768 개소

(단위:개소, '25.8.31.)

구 분	'25.8월	'24년	'23년	'22년	'21년
합계	14,768	15,577	16,620	18,799	20,428
공공건축물	7,661	8,052	8,526	9,693	10,661
어린이집	1,205	1,350	1,548	1,952	2,209
대학교	2,982	3,166	3,492	3,890	4,083
다중이용시설	2,356	2,411	2,430	2,572	2,719
기타*	562	598	624	692	756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교육부 관리 대상 : 총 1,702개소

(단위:개소, '25.8.31.)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702	81	890	375	346	10